

2026년 럭비 체육지도자 실기구술 안내사항

□ 자격검정 안내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실기	2026. 7. 3.(금), 10:00	남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 보조경기장	
구술	2026. 7. 3.(금), 13:00	남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 주경기장 1층	W1 입구 방향

□ 필수 준비사항

- 운동복(소속이 드러나지 않는 복장)
- 운동화, 스파이크
- 수험표(응시자가 출력해 와야 함, 수험표 미지참 시 시험 응시 불가능)
- 신분증

※ 신분증 인정 범위: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체육지도자 자격증(전자증명서 포함)¹⁾, 모바일 신분증²⁾만 가능

1) 정식 발급(출력)된 자격증 또는 정부24 전자문서지갑 서비스 또는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은 체육지도자 자격증 전자 증명서로서, 민간 앱(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의 전자지갑을 통해 확인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자격증)에 한하여 인정(앱 실행단계부터 확인, 캡처 등 사본은 불인정)

2)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에 한하여 인정하며, 전자기기 제출 전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표출되는 모바일 신분증만 인정(캡처 등 사본은 불인정). 신원 확인 완료 시 해당 응시자의 수험표에 '신원확인필' 등의 도장을 찍어 이후 신분 확인 시 신분증 제시 면제 가능

※ 안내한 내용 외 모두 절대 불가

□ 응시자 유의사항

- 수험표 사진 : 측면사진, 배경이 나타나는 사진, 모자 착용 사진, 기타 얼굴 인식이 안 되는 사진 등 불가
 - 수험표 사진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 입실 불가할 수 있음
- 시험 종료 전까지 시험 관련 제반지침, 절차 미준수 등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가 있는 경우 현장에 있는 대한럭비협회 직원에게 이의제기
 - 현장에서 검증되어야 하는 실기구술 시험 특성상 관련 이의제기는 응

시자가 시험장 퇴장 전까지 이의신청하여야 조치 가능

- 검정 전 과정 동영상 촬영
 - 시험 진행 중 안전사고 등 돌발 상황 대비용 촬영으로 응시자 대상 추후 열람·제공 불가
- 응시자는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 당일 입실 시간에 맞춰 시험장에서 대기하여야 함
- 응시 인원이 많거나 불참하였을 경우, 검정 시행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시험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구술시험의 경우 최대 2시간 대기 발생
- 결시 또는 중도 포기한 응시자는 현장에서 시험 중도 포기자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수수료는 환불 불가
- 입실 후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정 휴대 및 사용 등의 일체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해당 사항을 위반 한 경우 부정행위자 또는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로 처리

□ 기타 안내

- 경기장 내 별도의 샤워 시설 이용 불가
- 시험대기: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 완료

※ [참고]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

□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은 시험중지(퇴실) 및 당해시험 무효(0점) 처리 가능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의 기준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과 수험표를 지참하지 않은 행위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대기)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행위
3. 시험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대기)실에서 퇴실한 행위
4.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5. 응시자가 시험(대기)시간 중에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블루투스 이어폰, 스마트워치, 기타 시각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태블릿PC, 녹음기, (전자)계산기, 보조배터리 등]를 소지하거나 착용하는 행위, 전자알림음 혹은 진동을 발생 시키는 행위
6.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7. 시험 종료 안내 후 답안을 제시하는 행위
8. 기타 감독지시 불이행, 지침위반 등으로 퇴장시킬 필요가 인정되는 행위
9.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학교명, 소속, 상호, 단체명, 마크) 등이 부착된 복장·도구를 사용하는 행위

2026. 7. 2.[수]



(사)대한력비협회